

 국토교통부	<h1>보도참고자료</h1>		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
	배포일시	2019. 7. 17.(수) 총 3매(본문3)	
담당 부서	자동차정책과	담당 자	·과장 윤진환, 기술서기관 김현진, 사무관 유연형 ·☎ (044) 201-3835, 3838, 3843
보도일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## 미국 등 해외국가도 리콜요건과 처벌조항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.

- 리콜을 해야하는 자동차의 결함을 우리나라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1조에서는 ①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②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, 이는 미국과 동일한 방식입니다.
- 미국의 자동차 안전법인 US Code 30118도 제작사는 자동차 안전 관련 결함(defect is related to motor vehicle safety)을 인지하면 교통부에 보고하고 리콜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※ 미국 리콜요건(US Code 30118)

- (1) learns the vehicle or equipment contains a defect and decides in good faith that the defect is related to motor vehicle safety;
- (2) decides in good faith that the vehicle or equipment does not comply with an applicable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 prescribed under this chapter

- 자동차 리콜은 제작사에서 스스로 결함을 인지하여 실시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,
- 우리나라도 미국(NHTSA) 등과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·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결함조사를 거쳐 결함으로 결정되면 제작사가 우선 자발적인 리콜을 이행하여야 하는 체계이며,

- 우리나라 국토부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, 결함조사, 해외리콜 사례 등 결함조사를 통한 리콜 실적은 미국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.

\* 전체리콜건수 중 결함조사를 통한 리콜비율(한국/미국) : '16년 44%/58%, '17년 67%/21%, '18년 38%/12%

□ 자발적 리콜의무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「자동차관리법」 규정(제78조)은

- 제작사에게 높은 자율성을 부여한 '자기인증제(03년)'도입취지를 감안하여 제작사가 결함을 인지하고도 결함을 공개 시정조치하지 않고, 방치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하기 위한 것이 입법 취지입니다.

\* 형식승인제 : 자동차안전기준(160여개 항목) 준수여부를 정부가 확인한 후 자동차제작사는 해당 자동차를 판매(미국, 캐나다, 한국 제외한 모든 국가)

\*\* 자기인증제 : 자동차안전기준(160여개 항목) 준수여부를 자동차 제작사가 스스로 확인하고 해당 자동차를 판매(미국, 캐나다, 한국)

□ '자기인증제'를 도입한 미국, 캐나다의 경우에도 현행 「자동차관리법」과 유사한 처벌조항을 두고 있습니다.

- 미국 자동차안전법(49 US Code 30170)은 사망·중상을 초래한 결함이 자동차 안전과 관련되었다는 것을 교통부장관을 오도할 의도로 교통부 장관에 대한 보고의무\*를 위반하면 처벌(1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)하고 있습니다.

\* US code 30166에서 결함사실, 해외 리콜정보 등에 대한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음

- 사망·중상을 초래한 안전결함을 교통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발적 리콜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됩니다.

- 캐나다의 경우에도 자동차안전법에 결함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여하고 위반하는 경우 처벌(징역 또는 벌금)하고 있습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(조선일보, 7.17) >

◆ “자동차 리콜, 엉뚱한 곳으로 굴러간다”

- 현행 「자동차관리법」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준다는 결함의 정의가 애매모호하고, 결함여부를 조속히 판단해 주는 객관적 기관도 없음
- 현행 「자동차관리법」은 자발적 리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, 이는 전 세계에서 찾기힘든 과도한 형벌 만능주의
  - 미국은 결함의심사고시 철저한 조사로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처벌은 하지 않음
  - 미국은 사망 또는 중상 사고가 난 경우 제조사가 정부를 기망하기 위해 허위보고한 ‘사기’에만 처벌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 
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김현진 서기관, 유연형 사무관  
(☎ 044-201-3838, 384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